

제 2997호	화순군공보	발행일 : 2021년 2월 16일 발행인 : 화순군수 발행처 :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화순군 기획감사실							
차 례									
조 례									
화순군 조례 제2855호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규 칙									
화순군 규칙 1394호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30							
고 시									
화순군 고시 제2021-20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36							
화순군 고시 제2021-21호		2021년 화순군 지적재조사사업 대행에 관한 고시 37							
공 고									
화순군 공고 제2021-256호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38							
화순군 공고 제2021-257호		2021년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39							
화순군 공고 제2021-263호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 41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 란									

제2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1.1.29.)에서 의결된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2월 16일
화순군수 구충곤



화순군 조례 제 2855호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읍·면사무소”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인터넷 홈페이지를”을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한다.

제10조 중 “「화순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및 그 밖에 관련 부서별로 관리하는”을 “「화순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및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련된”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 완화적용)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

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3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따른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에 관한 조치가 포함된 개발행위내용에 대하여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골프장, 스키장, 기존 사찰, 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설 등의 개발행위 특성상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 상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제1호 중 “「화순군 건축조례」 제27조”를 “「화순군 건축 조례」 제27조”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를 “영 제56조의2제1항제5호”로 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를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 제57조제1항

제1의2호다목”을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을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라목”으로 한다.

제28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항 중 “규칙 제9조제5호”를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30조의2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변경관지구”를 “특화경관지구”로 하며, 같은 조 제6호의2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8조제2호 중 “수변경관지구”를 “특화경관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40조 본문 중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로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부지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제42조부터 제4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7조의 제목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을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7조제1항”을 “영 제76조제2호”로, “공용시설보호지구”를 “중요시설물보호지구”로 한다.

제50조제2항제1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51조제1호 중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목적 관람

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가목의 아파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제58조제5항 중 “영 제85조제1항”을 “영 제85조제1항”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전단 중 “주택 재개발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및 주택 재건축 사업을”을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를 “용적률이”로 한다.

제61조의3 중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2조”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44조”로, “범위에서 150퍼센트를 곱한 비율로 할 수 있다”를 “범위의 150퍼센트 이내로 한다”로 한다.

별표 4 제2호차목(1) 중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을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으로 하고, 같은 목 (3)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며, 같은 목 (4)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별표 16 제2호아목(3)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목 (4)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별표 19 제2호자목(3)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목 (4)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며, 같은 호에 더목 및 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촌융복합시설. 이 경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른 면적 및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별표 21 제2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2 제2호마목 및 바목을 각각 사목 및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의 국방·군사시설 중 군수가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별표 23 제2호나목 중 “자목”을 “자목·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파목 및
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 ----- ----- ----- ----- ----- 읍· 면 행정복지센터----- 누리집 (인터넷 홈페이지)을 ----- -----.
② 군수는 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당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군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누리집----- -----.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 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화순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및 그 밖에 관련 부서별로 관리하는 조례에 따른다.

<신 설>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

----- 「화순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및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련된 -----
-----.

제15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 완화 적용)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3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골프장, 스키장, 기존 사찰, 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설 등 개발행위의 특성,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에 관한 조치가 포함된 개발행위내용에 대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생략)

2.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경사도의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3. 4. (생략)

<신설>

----- . <단서 삭제>

1. (현행과 같음)

2. -----

----- 따른다)
<단서 삭제>

3.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에 관한 조치가 포함된 개발행위내용에

② (생 략) 제24조(토지분할 허가기준)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화순군 건축조례」 제27조를 준용하여 분할제한면적 이	대하여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u>골프장, 스키장, 기존 사찰, 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설 등의 개발행위 특성상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2. <u>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 상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24조(토지분할 허가기준) ----- ----- ----- ----- ----- ----- ----- ----- ----- ----- 1. 「화순군 건축 조례」 제27조 -----
---	--

상으로 분할할 것.

2. ~ 4. (생략)

제26조의2(성장관리방안의 대상 지역 등) ① 영 제56조의2제1항 제4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법 제58 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유보 용도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① (생략)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 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 라. (생략)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자문) 군수는 다음 각

-----.

2. ~ 4.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성장관리방안의 대상 지역 등) ① 영 제56조의2제1항 제5호-----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

-----.

1.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

가. ~ 라. (현행과 같음)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자문) -----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4. 경사도 20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5. (생략)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② (생략)

제30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실시하는 민

-----.

-----.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5. (현행과 같음)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
-----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5호 -----

-----.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
조-----

원실무종합심의회의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
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6. (생 략)

6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
호의 운수시설

7. ~ 16. (생 략)

제35조(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건
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전통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자
목, 타목(기원으로 한정한다),
아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
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7호의 판매시설

4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

제33조(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
축제한) -----
특화경관지구 -----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7. ~ 16. (현행과 같음)

<삭 제>

- 1 제8호의 운수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5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7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
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
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
리 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
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
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
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u>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u>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u>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u>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u>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u>	
<u>제36조(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u>	<u><삭 제></u>
제3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생 략) 2. <u>수변경관지구</u> : 5층 또는 20	제3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u>특화경관지구</u> -----

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3. 전통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제40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삭 제>

제40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
--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 -----

-----.

제41조(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단,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형태, 외관 등이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8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18호의 창고시설(부지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교정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

류심사원, 보호관찰소, 갱생보

호소,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

· 보육· 교육· 보건 등의 용

도에 쓰이는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

1호부터 제3호· 제5호· 제6호

·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

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

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

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

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

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계획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

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2조(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 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군수)가 차량출입 금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불라

<삭 제>

드 및 돌의자

2. 조경식수

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3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에 따
라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심지미관지구 : 5층 이상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
(20미터 이상 도로에 연결한
경우는 5층 이하)

제44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미관지구 안에서 미관유지에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
담장 · 대문의 양식 · 구조 · 형
태 · 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
한할 수 있다.

제45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 · 장독
대 · 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
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

<삭 제>

<삭 제>

<삭 제>

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 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6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
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 보호지구 안에서
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7호의 판매시설

2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정신병원·요양병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5호의 숙박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6호의 위락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삭 제>

17호의 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8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자
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
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정시설

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

육·교육·보건 등의 용도

에 쓰이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

원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47조(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
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
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다.

1. ~ 13. (생략)

제50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
축제한) ① (생략)

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
· 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
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
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
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
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
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
을 모두 갖춘 것

제47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
물) 영 제76조제2호-----

---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

1. ~ 13. (현행과 같음)

제50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
축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다. (생략) 2. (생략) 제51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 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 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u>숙박시설제한지구</u>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 박시설 2. <u>위락시설제한지구</u>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 락시설 3. <u>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 지구</u> : 「건축법 시행령」 별 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제52조(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 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 안에서	가. ----- 「물환경보전법」 ----- ----- ----- ----- 나.·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51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 의 건축제한) ----- ----- ----- ---. 1. 「건축법 시행령」 ----- ----- ----- 2. 「건축법 시행령」 ----- ----- ----- 3. 「건축법 시행령」 ----- ----- ----- ----- 제52조(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 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	---

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위락지구

2. 리모델링지구

3. 방재지구

4. 보존지구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7. 경관지구(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서 허용되는 건축물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 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목의 관람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

제58조(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 ① ~ ④ (생략)

⑤ 영 제8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⑥ (생략)

제61조(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가목의 아파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제58조(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영 제85조제1
항-----
-----.

⑥ (현행과 같음)

제61조(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

에 따른 주택 재개발사업, 도시
환경 정비사업 및 주택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
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관계확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
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
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
적률 $= [(1+0.3a)/(1-a)] \times (\text{제58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a 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
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
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
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
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생략)

-----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
업을 시행하기 -----

② -----

----- 용적률이 -----

③ (현행과 같음)

제61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2조에 따라 화순백신산업 특구 내 자연녹지지역에 조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150퍼센트를 곱한 비율로 할 수 있다.	제61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44조----- ----- ----- ----- ---- 범위의 150퍼센트 이내로 한다.
--	--

제3회 화순군 조례·규칙심의회(2021.2.4.)에서 확정된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2월 16일
화순군수 구충곤



화순군 규칙 제 1394호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융자시행)”을 “(지침 통보)”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융자금 수령 및 사업추진)”을 “(융자금 지급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사업대상자는 사업추진 완료시 별지 제3호서식의 용자사업 완공확인서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출된 용자사업 완공확인서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에 용자대상 및 용자금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수탁금융기관에서는 사업이 완료된 사업대상자에게 용자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의 제목 “(사업추진 지도 및 실적보고)”를 “(사업추진 지도 및 관리)”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 용자 신청서

①신청자	주 소			전 화 번 호		
				자 택		
				핸드폰		
	성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남.여)		
	농·어업 종사기간	년 월	기용자내역	용 자 명		
	금융기관명			년 도		
귀 농 어 부		금 액		백만원		
신지식 화사 농어업인 여		상환여부				
②신청내역	사 업 명		신청 자금 종류	시설() 운영()	상환 기간	2년거치 일시상환()
	사 업 량					2년거치 3년 상환()
	용자신청 금 액	백만원				3년거치 5년 상환()
③금융기관 확인사항	담보물 종류	가능금액		· 금융기관명 :		
				· 확인일시 : . . .		
				· 확 인 자 : (인)		
④첨부서류	사업계획서 1부					
「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명·날인) 화 순 군 수 귀 하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 융자사업
완 공 확 인 서

사업자	주 소			전 화 (핸드폰)			
	성 명			생년월일 (남.여)			
	금융기관명						
사업위치							
사업비 투 자	계 획 (천원)			실 적 (천원)			
	계	용자	자담	계	용자	자담	
주 요 추 진 사 항	계 획			실 적			
	○ ○ ○ ※ 사업량(물량)등 자세히 기재			○ ○ ○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 용자사업을 상기와 같이 추진완료 하였기 완공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 사업비집행 세부 명세서 1부.							
년 월 일 제출자 주 소 : 성 명 : (인)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음 을 확인함.							
년 월 일 ○○ 읍 면 장(인)							

[별지 제7의2호서식] <삭 제>

주요 시설물(사업) 전경

□ 사업장소재지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용자시행) (생략)	제6조(지침통보) (현행과 같음)
제10조(용자금수령 및 사업추진) 수탁금융기관에서는 대출거래 약정서를 체결함에 있어 금융기 관 중앙회의 내부규정을 준수하 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사업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주소지 읍·면장 사업완 공 확인서에 따라 용자금을 즉 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제10조(용자금지급절차) ① 사업 대상자는 사업추진 완료시 별지 제3호서식의 용자사업 완공확 인서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 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출된 용자사업 완 공확인서에 따라 수탁금융기관 에 용자대상 및 용자금액을 통 보하여야 하며 수탁금융기관에 서는 사업이 완료된 사업대상자 에게 용자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추진 지도 및 실적보 고) (생략)	제12조(사업추진 지도 및 관리) (현행과 같음)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우리군 소재 건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2. 17.

화 순 군 수



○ 도로명주소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만연로 66-4 외 5건

종전 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 고
(※부여 6건)			불		임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행복민원과(☎ 061-379-3455)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2021년 화순군 지적재조사사업 대행에 관한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측량·조사 대행에 관한 고시 등)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 석정·용두·풍암·한지·오동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등의 대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5일

화 순 군 수



1. 지적측량수행자 :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2. 사업지구 명칭 : 2021년 석정·용두·풍암·한지·오동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3. 사업위치 및 면적

사 업 지구명	사 업 시행자	사업 위치	필지 수	면 적 (㎡)
석정지구	화순군수	화순군 춘양면 석정리 227-7번지 일원	457	275,369
용두지구	화순군수	화순군 춘양면 용두리 46번지 일원	322	177,159
풍암지구	화순군수	화순군 청풍면 풍암리 65번지 일원	241	83,091
한지지구	화순군수	화순군 청풍면 한지리 247번지 일원	101	24,607
오동2지구	화순군수	화순군 동면 오동리 268번지 일원	266	198,664

4. 대행 업무

- 토지현황조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 지적재조사 측량(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5. 기타사항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화순군청 행복민원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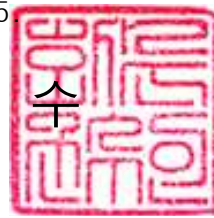
지적재조사팀(☎061-379-3451,34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0조 및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거소) 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장기간 방치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2. 15

화 순 군 수



1. 공 고 대 상 : 주·정차 금지 위반 대상자 명단 등 : 별첨
 2. 공 고 기 한(의견제출기한) : 2021. 2. 15. ~ 2021. 3. 12.(25일)
 3. 의 건 제 출 처 : 화순군청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
(화순군 화순읍 동현길 23 / ☎061-379-3785)
 4.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자문서포함), 구두진술(증명 할 수 있는 증거자료 제출)
 5. 기타 안내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경우는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 되므로, 공시송달 공고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50%가 감경 됩니다. 다만 체납된 과태료가 있는 경우 감경 되지 않으며, 법령상 감경이 어려가지인 경우라도 사전 통지서에 의한 의견진술기간 내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 거듭 감경되지 않습니다.
- 1)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3급까지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5) 미성년자

※ 의견 제시 기한 내 자진 납부코자 하는 경우와 기타 의문 난 사항은 화순군청 재난안전과교통안전팀(☎ 061-379-378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불법 주정차 사전통지서 반송이력 1부.

[공고문]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

화순군은 행정안전부와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취업, 창업 등)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규제분야)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으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 개요

- 기간 : 2021. 2. 16.(화) ~ 3. 17.(수)
- 주제 :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과제 : 민생규제 혁신 과제(5개 분야) ※ 복수 공모 가능

구 분	분 야	세부 내용
생활 부문	국민 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복지 저해규제 등
	일상 생활	▶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경제 부문	취업·일자리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소상공인·중소 기업 지원	▶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 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신산업	▶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 공모 방법

- 제출 서식 : 행정안전부 및 화순군 홈페이지에 게시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분량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우편 : (화순군) bdj8795@korea.kr / (행정안전부) jgh3931@korea.kr
 - 우 편
 - (우) 58112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화순군청 기획감사실 의회법무팀 ☎ 061-379-3253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KT&G 빌딩 632호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 우편은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 우수과제 선정 및 시상

- 선정기준 : 창의성(3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40%) 등

평가 기준	세부 내용	비 중
창 의 성	과제 내용의 참신성,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	30%
실현 가능성	과제 내용의 구체성, 집행 가능성, 타당성 등	30%
효 과 성	목적 달성 가능성, 과제해결 시 유용성, 파급성 등	40%

- 시상내역 : 장관 표창 및 시상금

구 분	시상 내역	인 원
최 우 수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50만원	1명
우 수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30만원	3명
장 려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10만원	16명

※ 시상 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우수과제 중 중복 과제가 있는 경우 접수일이 빠른 제안 과제에 대해 시상 수여

- 발 표 일 : 2021. 8월 예정

※ 우수과제 제안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기 타

- ①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②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 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금 회수

- 문 의 처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044-205-3996)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를 대장상 소유자나 그 상속인 또는 대장상 전매자나 그 상속인에게 발송을 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5명(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1. 02. 16. ~ 2021. 03. 03.(15일간)

3. 공고장소 : 해당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화순군청 행복민원과(☎061-379-34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조서 1부.

2021. 02. 15.

화 순 군 수

